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연례 학생 신상정보와 학생 사생활 보호 안내
Annual Notice for Directory Information and Student Privacy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20850
MCPS Regulation JOA-RA:학생 기록(Student Records)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에서의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안내는 뒷면을 봅시다.
(20 U.S.C. § 1232g; 34 CFR Part 99)

개인신상정보

학교는 우등상인 어너롤 및 수상 발표 등을 신문이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웹사이트에서 발표할 때 "신상 정보(directory information)"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학부모/후견인, 교사, 학생 조합기관을 통해 제공될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가 신상정보 공개제한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학교는 사전협의 없이 제공하신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사는 같은 반의 학생이 나중에 보기 위한 원격 온라인 수업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사진 촬영과 목소리 녹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 이를 명시해 주세요.

개인신상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학생과 학부모/후견인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학생 생년월일, 전공분야, 학년,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수여받은 학위와 시상(우등상 포함), 학생이 다닌 가장 최근의 교육기관, 출석일, 사진 및 사진류, 스포츠팀 구성원의 체중과 신장, 그리고 다른 유사한 정보.

개인신상정보 공개제한을 원하는 경우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년 9월 12일까지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본은 MCPS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불어, 베트남어, 중국어, 암하리어, 포르투갈어로의 번역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12일(목)까지 공개제한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부모님이 학생의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추후에 결정을 번복하고 싶으신 경우는 학교로 연락하십시오.

2024년 9월 10일 후에 등록한 학생은 등록 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2024-2025 학사연도 개인신상정보 공개제한 신청서

다음 두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위의 정의 참조)
- 개인신상정보의 다음 항목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다음 중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

- 이름 전화번호(s) 사진 주소 생년월일
- 이메일 주소 학부모/후견인 이름 학년 수준

개인정보 공개제한의 예외사항:

- 학부모/후견인, 교사, 학생 조합기관에 제공
- 우등생(Honor Roll) 발표용으로 신상제공 이어북의 사진제공
- 같은 반의 학생이 나중에 보기 위한 원격 온라인 수업 녹화에 학생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포함하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 이름 _____ 학년 _____ 학생번호 _____

학교 _____

학부모/후견인, 보호자/해당 학생 서명 _____ 날짜 ____/____/____

학생 신상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후견인/보호자는 학교가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이나 학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마다, 학부모의 추가 허락 없이 학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FERPA에 따른 여러분의 권리 안내

MCPS 학생의 학부모로서, 귀하는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와 연방정부 규정,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08.0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녀의 교육기록에 대한 특정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규정,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학생의 기록\)](#),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pdf/joara.pdf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학생기록의 검토 여러분이 학생기록을 요청할 경우, 요청후 45일 이내에 자녀의 교육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MCPS는 학생의 신분, 평가, 배치에 관련된 심리 시, 서면요청을 받은 후 학교의 실천 가능한 10일 이내에 요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기록을 열람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검토할 때 함께 동석합니다.
2. 학생의 기록 수정 자녀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또는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서면으로 기록의 수정을 학교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학생 기록), 적절한 경우,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공청회도 포함됩니다. 성적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학생 기록 공개 학생 기록 공개 연방, 주 정부 법으로 동의없는 공개를 규정하지 않는 한, 자녀의 교육기록의 개인 신상을 MCPS가 공개하기 전 서면으로 공개를 승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지침 및 비공개를 선택 양식에 대한 안내는 뒷면에 있습니다. 추가로 MCPS 내 학교 행정직원, 교사, 교직원이 적절한 교육적 필요**에 근거하여 학생의 정보를 알아야 할 경우,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MCPS 직원으로 직업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동의 없이 학생 신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양호 담당 교사와 보건 담당 교사, 학교의 보안 담당자,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임원, MCPS와 계약이 되어 있는 외부기관 고용인으로 MCPS에서 일할 경우(예: 변호사, 회계 감사관), 또는 MCPS 위원회와 학교 교직원의 업무를 돕는 학부모/후견인과 다른 봉사자들.

- 만약 학생의 등록이나 전학을 목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 MCPS는 다른 학교와 다른 교육구 또는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기관 교직원에게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기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MCPS는 명시된 정부기관을 포함해 FERPA가 인가할 경우, 리서치 프로젝트 승인, 사법 명령 준수, 합법적으로 발급된 소환장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비상상황일 경우에 학생기록부의 개인신상정보를 서면동의서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MCPS 웹사이트](#) 또는 각 학교에 있는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의 이의제기** FERPA에서의 여러분의 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또한 MCPS 재심 경로를 통한 상황해결의 노력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믿어질 경우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연방 교육부)의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5920, 전화:1-800-872-5327)

*자격이 있는 학생으로의 권리(Rights of Eligible Students) 이 권리는 18세인 학생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격이 있는 학생일 경우에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관계로 명시되어 있는 학생일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후견인은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학생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학교관계자가 학생의 교육기록을 검토할 경우 타당한 교육적 필요에 근거합니다.